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0517] https://sspc.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04.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19.]

sspc1725@naver.com

쑝쑝돈까스

정 보 공 개 서

『쑝쑝돈까스』가맹본부인 ㈜에스에스피씨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24 . . ㈜에스에스피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 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 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 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 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 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 기 바랍니다.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2차)

[대표 전화번호] 1577-1109

[대표 팩스번호] 031-376-1726

[가맹사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031-376-1725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별첨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3]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4] 메뉴 및 가격

[별첨5]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 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쑝쑝돈까스 외2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					
㈜에스에스피씨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4.10	2018.04.20	김영창	1577-1109		031-376-1726	
	법인등록번호	234111-0099436	사업자등록번호			216-86-009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511 111 01 11		쑝쑝돈까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				
대표이사 	김영창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창	1577-1109	031-376-1726		
		쑝쑝돈까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				
사내이사	박상화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창	1577-1109	031-376-1726		
	21.711.51	쑝쑝돈까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				
사내이사	김재덕	외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577-1109	031-376-172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송송돈까스	쑝쑝돈까스	18.04.17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1, 1층 109호(경남프라자)	김영주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카츠탄탄	카츠탄탄	21.04.25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2차)	김영창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카츠탄탄	카츠탄탄	22.10.1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길 117, 336동 501호	김재덕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쑝쑝돈까스"이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쑝쑝돈까스	
상 호	쑝쑝돈까스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과 상징하는 건축물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도개스 Ssyong Ssyong, Pork Cutlet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1262397-0000 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명칭은 현재 브랜드를 나타내며, 상호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가맹점포명입니다.

5. 최근 3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720,565	942,247	778,317	3,293,115	351,877	365,168
2022년	1,905,352	1,009,635	895,717	3,588,374	248,367	167,400
2023년	4,156,729	3,079,605	1,077,124	6,337,112	326,269	231,40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쑝쑝돈까스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검어ㅂ	이르 링피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기여차	대표이사	2018년 4월~	대 표	쑝쑝돈까스			
	김영창		현재	내 표	업무 총괄			
가맹사업관련임	박상화	사내이사	2018년 4월~	01 11	쑝쑝돈까스			
원			현재	01 YF	가맹점 관리			
	김재덕	11110111	2018년 4월~	01 Vł	쑝쑝돈까스가맹점			
	김새덕	사내이사	현재	0 \h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전	임원=	수(명)	지의소(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3	0	1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김영창	[카츠탄탄(The TAN TAN) 가맹본부 대표로 재직	2018년11월~ 2021년 4월 *해당 가맹사업을 (주)에스에스 피씨에 인도함	카츠탄탄(등록번호:20190044)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에 스피씨	가맹사업경영	2018년 4월~ 현재	쑝쑝돈까스(등록번호:20170517)라는 영업표지의 양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에 스피씨	가맹사업경영	2021년 3월~ 현재	쑝쑝떡볶이(등록번호:20210631)라는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에 스피씨	가맹사업경영	2021년 3월~ 현재	C.&tree coffee(등록번호:20210632)라는 영업표지의 음료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에 스피씨	가맹사업경영	2021년 4월~ 2020년 10월	카츠탄탄(등록번호:20190044)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쑝쑝돈까스	상표 서비스표	2017.06.21	제40-1262397-0000호	김영창	2027.06.21. (2027.06.2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쑝쑝돈까스] 가맹사업 현황

1. [쑝쑝돈까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7년 2월 8일

2. [쑝쑝돈까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숑숑돈까스	쑝쑝돈까스	김영주	2017년 2월 ~2018년 4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1, 1층 109호(경남프라자)
㈜에스에스피씨	쑝쑝돈까스	김영창	2018년 4월 ~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

3. [쑝쑝돈까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쑝쑝돈까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용용근까스	서양식	돈까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쑝쑝돈까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	2022.12.31			2023.12.31		
지각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 체	103	103		136	136		136	136	_
서울	4	4	_	11	11	_	10	10	_
부산	13	13	_	18	18	_	17	17	_
대구	2	2	_	2	2	_	3	3	_
인천	3	3	_	4	4	_	5	5	_
광주	_	_	_	-	_	_	_	_	_
대전	5	5	_	3	3	_	2	2	_
울산	4	4	_	4	4	_	4	4	_
세종	_	_	_	-	_	_	1	1	_
경기	25	25	_	31	31	_	29	29	_
강원	2	2	_	3	3	_	3	3	_
충북	1	1	_	2	2	_	1	1	_

충남	1	1	_	7	7	_	6	6	_
전북	_	_	_	1	1	_	1	1	_
전남	10	10	_	10	10	_	9	9	_
경북	8	8	_	9	9	_	11	11	_
경남	23	23	_	29	29	_	31	31	_
제주	2	2	_	2	2	_	3	3	_

5. 최근 3년간 [쑝쑝돈까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년	81	33	1	10	20	103	+22
2022년	103	36	-	3	11	136	+33
2023년	103	18	_	18	5	136	0

6. [쑝쑝돈까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쑝쑝돈까스]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사동/이르	аатт	정보공개서	어조	가만	점/직영점으	l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에스에스 피씨	쑝쑝떡볶이	20210631	분식	0/0	0/0	0/0
가맹본부	(주)에스에스 피씨	C.&tree coffee	20210632	커피	0/0	0/0	0/0

7. <u>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u>

기준

[쑝쑝돈까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평균 매출액					
2023년 말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지역	가맹점 수	연간		배술액	(상한)	매출액(히	1안)아안	비고
7186 7	_{인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36	341,532	15,828	767,963	125,570	104,130	3,156	135곳산정
서울	10	336,737	16,903	627,852	125,570	139,850	3,036	10곳산정
부산	17	352,420	20,969	629,286	41,203	136,916	6,328	16곳산정
대구	3	해당없음						5곳미만
인천	5	273,548	11,482	350,781	119,750	19,816	4,427	5곳산정
광주	_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2	해당없음						5곳미만
울산	4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기	29	352,322	18,894	648,824	45,157	110,681	3,156	29곳산정
강원	3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6	239,866	4,126	387,277	41,435	123,244	4,763	6곳산정
전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남	9	310,064	3,644	435,241	40,060	243,578	5,798	9곳산정
경북	11	300,861	15,723	569,400	36,181	154,010	5,864	1곳산정
경남	31	375,180	17,886	767,963	68,899	104,130	5,391	31곳산정
제주	3	해당없음						5곳미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 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 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136개가 아닌 실제 135개 가맹점의 연간평균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쑝쑝돈까스]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6	113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남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증산역로 153 정우프라자 3F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된		관리	리 가맹점수	
경남지역	전 경 경	77- ³⁷ - (ध <i>स्त्र</i> ग)		30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	계약	가맹금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		권한	수령권한	
	2021.02.25.~2024.02. 24	0	>	<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쑝쑝돈까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6]쪽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동탄역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89, 우성	001 050 7071
기합는영	- 공단학자점 	KTX타워 2층	031-350-7871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쑝쑝돈까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 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가맹 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실제로 들어간 소멸되는 비용은 반환 안됨	-가입비(가맹비의 20%) -점포 실사(가맹비의 30%) -오픈 및 운영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과 오픈 지원의 대 가(가맹비의 50%)
교육비	3,300			교육 개시 이후에는 반환 안됨	-개점 전 서비스 /운영 교육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 증금	2,000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33,869	3,386			
인테리어 (점포내장 공사)	협력업체	33㎡(10평) 기준17,600 [철거,전기승압,테라 스,조경공사,화장실, 상하수도,도시가스, 소방설비,TV,오디오,	1,760	계약시 60% 중도금 30% 오픈5일전 10%	공사 전 계약 취소	건물형태,현장 상황,품목,수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냉난방시설 등 별도]			
홀집기류	협력업체	8,580 [포크,나이프,접시류, 의탁자, 그릇,컵 등]	계약시 60% 중도금 30% 오픈5일전 10%	상품 미공급시	
간판	협력업체	2,750 [금속공사(갈바),전 면간판,외부POP]	오픈전 100%	공사 전 계약 취소	권장사항
사인물	협력업체	1,650 [액자,내부글씨,이미 지시안,시트지]	오픈전 100%	공사 전 계약 취소	권장사항
주방설비	협력업체	15,180 [냉장고,제빙기,토핑 냉장고 등]	계약시 60% 중도금 30% 오픈5일전 10%	상품 미공급시	
주방설비	협력업체	3,190 [수유식튀김기]	계약시 60% 중도금 30% 오픈5일전 10%	상품 미공급시	
의탁자	협력업체	3,630 [식탁,의자,수저통 등]	계약시 60% 중도금 30% 오픈5일전 10%	상품 미공급시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당 금이십칠만오천원(₩275,000/부가세 포함)을 도면비, 감리비로 청구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 가맹희망자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발급 가능 및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발급가능자 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쑝쑝돈까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금의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 70%	광고 한달전까지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가맹점사 업자에 균분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 단·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판촉 한달전까지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판촉물 수량에 따라 책정 납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22만원 (부가세 포함)	매월지정일	미반환	수수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임	미반환	변경설치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1페이지 참조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달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 2023 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천원)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점의 영업상황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미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수시	문의:본사
새고신디	재고와 비교	テハ	(1577-1109)
하게하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人口	문의:본사
회계처리	조사 실시	수시	(1577-1109)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요구에 의하여 점포를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용은 해당 사유를 감안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30일]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유지를 원 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 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맹본부 제품의 제조방법, 레시피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

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입비·점포실사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가맹비의 일부,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쑝쑝돈까스]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상호·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귀하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전산장치 DB 등 영업 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 및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쑝쑝돈까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쑝쑝돈까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쑝쑝돈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는 [쑝쑝돈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4] 쑝쑝돈까스 메뉴 및 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 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서면시정 요구 2회 위반: 구두+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가맹사업법에 의한 가맹계약해지 통지	

가맹점 상황(점포의 위치, 점포의 크기, 고객성향 등)에 따라 가맹본부의 메뉴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가 임의로 메뉴를 추가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기 메뉴 이외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신 메뉴를 수시로 추가하고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성 (고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비자 제3자	본 정보공개서 V-3-1)에서 지정된 가맹점 판매 메뉴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경고	

다른 가맹적	가맹점에게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42 700	판매할 수 없음	03 06 10 · 71-017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4]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별첨4]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 배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돈까스 전문점	쑝쑝돈까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 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 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 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N OT GO NO)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쑝쑝돈까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 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쑝쑝돈까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경	V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쑝쑝돈까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 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 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제39조제1항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의 대금, 정기납입금, 기타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금 등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나 가맹점 운영 주요지침 또는 매뉴얼의 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제25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를 받음에 있어 성실의무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 보로 제공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등 거부를 선동하거나 협박 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 또는 불법행위 등이 입증되어 가맹본부나 다 른 가맹점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므로서 당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 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계으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 40조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 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 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을 위한 비용),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 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와 보증금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 중 및 계약 종료 후 1년간 귀하가 [쑝쑝돈까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까스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 완료	분의: 본사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쑝쑝돈까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1:00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나 탄력적으로 운영	문의: 본사 (1600-17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 점포별로 상이	자율	배우자, 친·인척 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수시	가맹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수시	가맹관리팀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쑝쑝돈까스]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 별행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비율	보다 저지	шп
十正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중 가맹점사업자간에 균분	의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AIM(OMM)	(27 0/1)
판촉행사	공동 판촉 활동	협의	협의 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 ·카달로그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기타 개별행사	행/	사에 따라 유동적	II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 전원에게 균분하여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소속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종료 후 철거·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 자는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 일십만 원(₩1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은 금오천만원 (₩5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정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및 상품의 직접조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오천만원정 (₩50,000,000원)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

기간에는 위약금으로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 판매된 모든 제품 매출의 배액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5) 본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의 2호 내지 4호의 위약벌 규정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본부에게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u>남은 계약일 × 금오만원정(₩50,000원)</u>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오천만원정(₩50,000,000원)으로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합계		45일 내외	11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3~31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D-30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일정 확인	D-24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 (20일)	-
교육실시	-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4 (1주일)	-
설비 및 집기	- 주방 및 홀 설비 -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D-10~2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평균적(66㎡ 20평)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연락처: 1588-1490,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W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 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 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 맹 본 부 부 담	가 맹 본 부 부 담	지 급 절 차	비용부담	비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N B E N	제외사유	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현지한 지장을주는 경우	이 명항목이 의 명이 공사비용이 의해 의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 명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 서 분할지급 가능) 이가 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 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 맹 점 사 업 자 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 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	
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 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팀 (1600-1725) (1577-110 9)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팀 (1600-1725) (1577-110 9)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쑝쑝돈까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매장 운영 등	실습교육 현장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서비스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수시	매년 비정기 교육으로 본사교육 일정참조
특별 교육	고객 서비스 등	실습교육	수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쑝쑝돈까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총1주일 (1일 10시간)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현장교육2일 포함
특별 교육 (고객서비스 등)	1일 이상	가맹점 사업자 부담	실비 책정후 가맹점사업자 통지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40조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직영점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직영점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직영점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인근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u>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u>)

수령인: (인) 또는 서명

[별첨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주)SSPC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u>년 월 일 시</u>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 부터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주)SSPC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은행전산망에서 쑝쑝 입력시	오류가 나니	명의자 성함 넣어주세요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쑝숑된	문까스 (가밍	행본부 코드 : 100978)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20층 2015호	전화번호	1600–1725
예치가맹금	₩ 10,800,000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기업은행 (주)에스	 에스피씨 1600-	-1725-01		
계좌	166(1)		1720 0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첨4] 메뉴 및 가격

(상권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날 수 있음)

(단위: 원)

연번	메뉴	가격	비고
1	프리미엄카츠	8,500	
2	큐브치즈카츠1	9,500	
3	큐브치즈카츠2	10,500	
4	고구마큐브치즈카츠	10,500	
5	모둠카츠	10,900	
6	경양식왕돈까스	8,900	
7	경양식스노우돈까스	10,500	
8	볶음우동돈까스	7,900	
9	두툼치즈돈까스	8,900	
10	피자돈까스	9,900	
11	큐브치즈돈까스	8,500	
12	쑝쑝돈까스	7,500	
13	슈프림돈까스	8,900	
14	치폴레돈까스	8,500	
15	눈꽃치즈돈까스	9,500	
16	불닭돈까스	7,900	
17	양파듬뿍돈까스	9,500	
18	토마토파스타	8,500	
19	까르보나라	8,500	
20	로제파스타	8,500	
21	미트볼토마토파스타	9,500	
22	매콤해물까르보나라	9,500	
23	매콤로제리조또볼파스타	9,500	
24	짬뽕우동	7,500	
25	유부우동	6,500	
26	수제어묵꼬지우동	7,500	
27	돈까스짬뽕우동	9,500	
28	김치치즈가츠나베	8,500	
29	베이컨볶음우동	5,900	
30	오야꼬동	8,500	
31	 규동	9,500	
32	부타동	8,900	
33	냉모밀	7,500	
34	돈까스냉모밀	9,500	

[별첨5]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